

입법정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목 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1. 공직선거법 (개정).....	2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3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4
4.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	6
5.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7
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9
7.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10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2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3
1.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14
2.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3.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17

I

법령 제정 · 개정 동향

공직선거법

1 [일부개정 `22. 1. 18. 시행 `22. 4. 1.]

소관부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3294-8400

■ 개정이유

- 2019년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730)의 취지에 따라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제16조제2항 및 제3항).
- 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9조제8항, 제26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등).
- 다.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02조제2항 단서, 제26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일부개정 `21. 4. 13. 시행 `22. 4. 14.]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044-201-40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신규허가 시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또한,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소전기 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3 [일부개정 `21. 12. 14. 시행 `22. 4. 1.]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63

■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4항 후단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2항 신설).

콘텐츠산업 진흥법

4 [일부개정 `22. 1. 18. 시행 `22. 4. 19.]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지역특색에 맞는 콘텐츠산업을 적극 개발·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행법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이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또한,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장애인 역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5 [제정 `20. 3. 31. 및 시행 `22. 4. 1.]

소관부서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93

■ 제정이유

-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 나. 사용전검사,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검사·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
등에게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부터 제20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음(제21조).

사.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절차, 전기
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2조부터 제29조

까지).

아.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38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일부개정 `22. 3. 24. 시행 `22. 3. 25.]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98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년’,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6개월’ 등 취소사유별로 구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환전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금액을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차 과태료 금액을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7 [일부개정 `22. 4. 5. 시행 `22. 4. 5.]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 044-205-5353

■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가입자가 풍수해로 인한 피해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풍수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86호, 2022. 1. 4. 공포, 4. 5.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범위,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 차액 지원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풍수해 보험료의 전부 지원 대상(제4조의2 신설)

풍수해로 인해 보험금 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이나 풍수해보험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있는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나. 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 위탁(제16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 관계 단체’ 나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 차액지원의 기준 마련(제17조의3 신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후 재난지원금이 상향 조정되거나 반복적인 풍수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지원금 확대에 인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풍수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 4. 19. 시행 `22. 4. 20.]

소관부서 : 통일부(정책기획과), 02-2100-577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기반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484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민 참여 및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Ⅱ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부산광역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

[의결일 `22. 3. 16.]

■ 제정이유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과 시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 영위를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2조)
- 나. 결혼친화환경 조성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규정 (안 제3조)
- 다.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 규정 (안 제4조)
- 라.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 수행 기업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 (안 제5조)
- 마. 관련 기관 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 (안 제6조)
- 바. 결혼친화 환경 조성 유공자 포상 근거 규정 (안 제7조)

2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일 `22. 3. 25.]

■ 제정이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 (안 제2조)
- 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다. 진흥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라. 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 마. 공예명장과 우수공예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안 제8조)
- 바.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 제정이유

정부는 방위산업 관련 R&D사업 및 민·군 기술협력사업 등을 확대하는 추세로 이에 경상북도의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산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 나.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제6조)
- 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Ⅲ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의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를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관련)

[의견22-0091] 경상남도 산청군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의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를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의견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1호의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의미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행정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하면서 이 영 제81조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이하 “산청군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제1호에서는 이장 임명과 관련한 주민총회의 의결권을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는 주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당해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별다른 정의가 없다면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주민의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住所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은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으로 주민을 규정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지는 각종의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면, 산청군규칙의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의미는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 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 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 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삭제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세대주의 배우자
 -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② ~ ③ (생략)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임명 및 해임) ① 읍·면장은 주민 총회에서 선출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리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

②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1. 해당마을에서 제1항에 따라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은 경우
2. 해당마을에서 주민총회의 방법을 결정·합의하지 않은 경우
3. 신설 리와 리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위원장이 고의로 이장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4. 해당마을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3개월 이상 이장임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주민 총회는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2.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리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과 협의 후 그 결과를 마을회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2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상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는 문구를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 관련]

[의견22-0084] 광주광역시 서구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상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는 문구를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을 고문

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제처 2012. 4. 15. 의견제시 21-0107 참조).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자(제3조)로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제7조제1항)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업 후 「변호사법」에 따라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제21조제1항), 3인 이상의 변호사로 설립된 법무법인(제40조 및 제45조제1항), 7인 이상의 변호사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제58조의2 및 제58조의6), 법무조합(제58조의18 및 제58조의22제1항)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제50조), 법무법인(유한)(제58조의16), 법무조합(제58조의30)은 각각 그 법인 명의 또는 조합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고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하게 됩니다.

살피건대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광주시서구조례”라 한다)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세는 단위(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자연인을 의미하므로,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서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법」 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르면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그 법무법인 등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광주시서구조례 제2조의 “고문변호사”를 문언 그대로 변호사 개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고문변호사”의 범위에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유능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조례의 입법 취지(각주: 광주시서구조례 제1조 참조)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바,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중에서도 해당 법률사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담당 변호사를 특정하여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광주시서구조례 제2조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는바 고문변호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계법령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22(구성원 등) 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3

「청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반드시 군의회 의원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청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의견22-0061] 충청남도 청양군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청양군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반드시 군의회 의원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청양군의회가 청양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군의회 의원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임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에서는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서는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선임방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청양군결산검사위원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은 청양군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군의회가 선임하며, 군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청양군결산검사위원조례에서 지방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비율을 상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들이 추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를 하여 결산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령과 조례에서 결산검사위원 중에 지방의회의원 수의 하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양군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반드시 군의회 의원이 포함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청양군결산검사위원조례 제3조제1항의 군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제6조제1항의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는 규정이 해석·적용상의 충돌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은 군의회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경우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에 관해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이 반드시 충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군의회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대표위원의 선출에 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은 4인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군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의 장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대표위원 및 의회 출석답변)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